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석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953

발의연월일: 2021. 5. 7.

발 의 자: 김석기·김선교·김정재

박 진 · 송언석 · 이채익

정진석 • 조태용 • 지성호

태영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기간 동안 공관이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하며, 관할구역의 재외국민 수가 4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초과인원 4만명당 1개의 재외투표소를 최대 2개소까지 추가로 설치·운영할 수 있음.

그러나 관할구역의 면적과 재외국민 수를 고려할 때 현재 운영되는 수보다 더 많은 수의 재외투표소가 필요한 지역이 있음에도, 현행법은 재외투표소의 추가 설치 기준을 4만명당 1개소로 규정하고 그 최대설치 개수도 2개소로 한정하고 있어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. 실제 2019년 기준 로스앤젤레스의 재외국민수는 재외공관의 관할구역 중 가장 많은 25만여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추가로 운영된 재외투표소는 2개소에 불

과한바, 거주 인원이 많은 국가와 지역을 중심으로 투표소의 추가 설 치가 필요한 실정임.

이에 관할구역 내 재외투표소의 추가 설치 요건을 재외국민 수 4만명당 이상에서 2만명 이상으로 하고, 설치 기준도 재외국민 수 4만명당 1개소가 아닌 2만명당 1개소로 완화하며, 추가 설치 가능한 재외투표소의 개수를 최대 2개소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재외투표의 편의를 제고하고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(안제218조의17제2항).

법률 제 호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8조의1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"4만명" 을 "2만명"으로 한다.

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사유가 있는 때에는 2만명을 초과한 수에 대하여 매 2만명마다 재외투표소를 1개소씩 추가로 설치·운영할 수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8조의17(재외투표소의 설치	제218조의17(재외투표소의 설치
· 운영) ① (생 략)	·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제1	2
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	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	
있는 경우에는 재외투표기간	
중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	
른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	
외의 시설·병영 등에 추가로	
재외투표소를 설치 · 운영할 수	
있다. <u>다만,</u> 제1호에 따른 사유	<u><단서 삭제></u> <u>이 경우</u>
로 추가하여 설치하는 재외투	제1호에 따른 사유가 있는 때
표소의 경우에는 재외국민수가	에는 2만명을 초과한 수에 대
4만명을 넘으면 이후 매 4만명	하여 매 2만명마다 재외투표소
까지마다 1개소씩 추가로 설치	를 1개소씩 추가로 설치・운영
•운영하되, 추가되는 재외투표	<u>할 수 있다.</u>
소의 총 수는 2개소를 초과할	
수 없다. <후단 신설>	
1.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4	1 <u>2</u>
<u>만명</u>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	<u>만명</u>
는 경우	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③ ~ ⑨ (생 략)	③ ~ ⑨ (현행과 같음)